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13 민사부

판 결

사 건 2006가합16599 손해배상(기)
원 고 서울반도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정제

피 고 주식회사 한미글로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근, 전순덕, 이영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한호동

변 론 종 결 2007. 2. 23.
판 결 선 고 2007. 3.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788,311원 및 이에 대한 2006.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 갑 제5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000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안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10. 28. 피고로부터 안산시 원시동 공장용지 3,200.2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3,050,000,000원에 매수하여, 2006. 4.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터파기 공사를 하였는데, 2006. 8. 25.경 이 사건 토지 지하에 폐수 및 슬러지{오니(汚泥)를 뜻함, 이하 폐수 및 슬러지를 합쳐 '이 사건 폐기물 등'이라 한다}가 불법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 해 9. 1.경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여 확인시켰다.

다. 원고는 2006. 8. 21.부터 2006. 9. 16.까지 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게 의뢰하여 이 사건 폐기물 등(총 1001.54톤)을 처리하였는데, 그 처리에 소요된 비용은 137,390,000원(원금 124,900,000원에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이다.

라. 한편 이 사건 폐기물 등과 같은 비중의 매립토 터파기 공사를 위해 원고가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은 7,601,689원(=6,910,626원(=1001.54톤×단가 6,900원)에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매도한 이 사건 토지에는 이 사건 폐기물 등이 불법 매립되어 있어 통상의 토지가 갖추고 있어야 할 성상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부담하게 된 이 사건 폐기물 등 처리비용에서 원고 자신이 지출의무를 부담하는 이 사건 폐기물 등과 같은 비중의 이 사건 토지의 매립토 터파기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인 129,788,311원(=137,390,000원-7,601,6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는 1993. 12. 24. 소외 태림포장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상태 그대로 원고에게 매도한 것일 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 이 사건 폐기물 등을 매립한 적이 없고, 피고가 2006. 9. 4.경 원고에게 원인제공자 규명을 위한 현장보존조치를 요청하였음에도 원고가 자신의 공장 신축 공사를 위해 이 사건 폐기물 등을 처리함으로써 향후 원인제공자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 원고 또한 그로 인한 책임은 감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폐기물 등 처리비용 중 폐기물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지출된 비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 특히 폐기물을 실어 나르기 위해 소요된 상차비용은 원고가 어차피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매립토를 처리하기 위해 지출하게 되는 상차비용과 필요장비나 필요인력, 필요작업일수 등에 있어 별 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이는 모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000의 증언에 의하면, 폐기물을 치울 때 슬러지가 발생하면 일이 인력으로 실어야 하고, 폐기물을 포대에 조심스럽게 담아야 하는 작업상의 특징이 있으며, 폐기물을 실어 나르는 차량도 일반 차량과는 다른 차량을 사용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의 상차방법과 일반 매립토를 처리하는데 있어서의 상차방법 사이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고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의 상차방법이 그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 매립토를 상차하는 경우에 비해 더 까다롭고 어려운 작업이라 할 것이어서 그 비용에 있어서도 일반 매립토의 상차비용과는 차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밖에 달리 이 사건 폐기물 등 처리비용 중 폐기물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지출된 비용을 제외한 비용의 존재 및 그 액수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폐기물 등 처리비용에서 공제한 매립토 터파기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인 위 7,601,689원은 현실을 무시하여 과소하게 산정된 것인바, 피고가 소외 일주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의뢰하여 알아 본 예상 소요비용인 31,974,836원이 현실에 맞는 비용으로서 위 예상 소요비용이 이 사건 폐기물 등 처리비용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산정한 매립토 터파기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현실을 무시하여 과소하게 산정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폐기물 등 처리비용에서 공제한 매립토 터파기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인 위 7,601,689원은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대우엔지니어링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단가에 의해 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위 매립토 터파기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한 이상 이를 두고 현실을 무시한 과소한 산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액 129,788,311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 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인 2006. 10. 13.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수천 _____

 판사 정영훈 _____

 판사 고경남 _____